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26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5. 12.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05. 1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6. 05.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2. 개정이유

당항포관광지의 체계적인 운영 및 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맞춤법 정비 등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나. 만 나이 정비 및 관외 이용객 신설

1) ‘만’ 삭제(안 제4조제1호·3·4·5, 안 제8조제1항제4호)

2) 관외 이용객 정의(안 제4조제7호)

다. 입장료 및 입장료 징수에 대하여 정비(안 제5조)

라. 개방시간 및 대표시간에 대하여 정비(안 6조)

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목 변경 및 기념품 지급 부분 추가

(안 제6조의2)

- 도장 찍기, 보물찾기, 가상현실 증강체험 참가자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추가

바.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 규정 정비·추가(안 제8조)

1)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 규정 정비

2) 입장료 경감 규정 추가

가)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전체 입장료의 30퍼센트(4인 이내)

나) 5만원 이상: 전체 입장료의 40퍼센트(4인 이내)

사. 입장요금표 정비(안 별표 1)

1) 주요 관광지 연계 할인(1개월 이내) 및 협의 지자체 주민 삭제

2)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반영

아. 시설이용료 요금 정비(안 별표 2)

1) 제3주차장 이용객 주차료 무료 변경

2) 트램카 이용료 변경

(기존) 트램카 1회 이용권 1,000원, 자유이용권 3,000원

(변경) 트램카 1회 이용권 2,000원, 2회 이용권 3,000원

3) 주제관 내 입체영상관 및 가상현실체험존 이용료 징수

(신규) 입체영상관 2,000원, 가상현실체험존 2,000원

4) 돛형펜션 이용료 변경

(기존) 성수기 110,000원, 비수기 주말 80,000원, 주중 65,000원

(변경) 성수기 80,000원, 비수기 주말 60,000원, 주중 50,000원

5) 카라반 이용료 삭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관광진흥법」 제67조

2)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375호

가) 예고기간: 2023. 3. 10. ~ 3. 30.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 조례안   | 수정안(검토의견)   | 검토결과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해당조항: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의 신청자 |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 에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br><br><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여행사명<br/>(단체명)</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대표자</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남/여)</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 여행사명<br>(단체명) |       | 대표자 | (남/여) | ... |  |  |  | <input type="checkbox"/>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의 성별 구분 항목 신설하여 반영코자 함 |
| 여행사명<br>(단체명)   |   | 대표자           | (남/여) |     |       |     |  |  |  |  |
| ...   |   |               |       |     |       |     |  |  |  |  |

6)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7)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 5. 본문: 붙임과 같음

##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조례 제정의 취지(필요성)

-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당항포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관람객 유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주요 내용 검토

- 위치 정비(안 제2조)
  - 당항포관광지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명시
-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4조제1호, 안 제4조제7호)
  - 나이의 사회적·법적 기준을 만 나이로 시행함에 따라 ‘만’ 삭제
  -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외 이용객의 정의 추가
- 입장료 및 입장료 징수 정비(안 제5조)
  - 조 제목 ‘입장요금’ 을 ‘입장료 및 입장료 징수’ 로 수정
  - 입장료 징수에 관한 내용과 징수한 입장료 등의 군 금고 납입에 관한 사항 규정
- 개방시간과 대표시간 정비(안 제6조)
  - 개방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되 동절기 기간의 개방 시간을 9시부터 17로 달리 규정함.
  - 대표시간을 개방시간을 감안하여 개방시간 개시부터 개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규정

- 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 조 제목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을 ‘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 으로 수정
  - 관람객 유치를 위해 행사 참가자에게 3만 원 미만의 기념품 지급 규정 추가
-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안 제8조)
  - 관계 법령 관련 의무적 면제 등 입장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고성군민의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관외이용객의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입장요금표 정비(안 별표1)
  -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의 입장료를 고성군민 입장료로 적용
- 시설이용료 정비(안 별표2)
  - 제3주차장 시설이용료를 무료로 변경
  - 트램카 및 팬션 이용료 조정, 주제관 이용료 신설
-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의 대표 관광지인 당항포관광지 운영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서 다른 규정에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장료 등을 정비, 신설하고 행사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액 산출의 적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6. 5. 원안가결